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097
----------	------

2019년 12월 17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년 10월 16일, 이호대 의원 외 13명
- 나. 회부일자 : 2019년 10월 22일
- 다. 상정일자 : 제290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5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19년 12월 17일 상정·수정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이호대 의원)

- 가. 제안이유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현행 조례는 공항 주변 주민들이 겪는 항공기소음 피해 보상을 위해 항공소음 영향도 (WECONL) 75 이상인 지역을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하여 소음 피해에 따른 각종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다만, 항공소음 영향도가 70 이상 75 미만 지역에 거주중인 주민들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 중인 주민들과 비슷한 정도의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대책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공항소음 방지 및 피해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김포공항 주변지역 내 항공소음 영향도 70이상 75미만의 소음 대책 인근지역(구로동, 공항동, 가리봉동, 가산동 등)을 공항소음 방지 및 피해지원 대상으로 포함·확대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각종 주민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또한,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자치구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여 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지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의 제명과 목적에서 공항소음대책지역에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추가하여 변경함(제명 변경).
-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정의하고, 주민지원사업 대상에 이를 반영함
(안 제2조제3호, 안 제2조제4호, 안 제3조제1항, 안 제4조제1항).
-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자치구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4.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항소음대책지역과 비슷한 정도의 소음으로 고통 받는 공항소음대책 인근지역에 거주 중인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항소음대책 인근지역을 주민지원사업 대상에 추가하며, 주민지원사업에 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검토의견

1) 관련 규정

- 「공항소음방지법」 제8조에 따른 소음대책사업은 소음대책지역에 적용하는 것으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 등에 대해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임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은 소음대책지역¹⁾과 소음대책인근지역²⁾에 적용하는 것으로 주민복지사업과 소득증대사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으로 국비 75%와 구비 25%를 지원하고 있음.

1) 「공항소음방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소음영향도(WELPNL, 웨클) 75이상의 지역(양천구 신월동 다수, 구로구 고척동 다수, 강서구 공항동과 화곡동 일부)

2) 「공항소음방지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밖의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음영향도(WECPNL, 웨클) 70이상 75미만의 지역(양천구 신정동 다수, 구로구 가리봉동 및 개봉동 다수, 강서구 공항동, 화곡동 다수, 금천구 가산동 및 독산동 일부)

<2018년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구분		계		양천구		구로구		강서구		금천구		
		개소	백만원	개소	백만원	개소	백만원	개소	백만원	개소	백만원	
소음 대책 사업	소계	108,722	26,385	82,738	19,680	25,942	6,683	42	22	-	-	
	주택	방음 시설	23	818	18	670	4	131	1	17	-	-
		냉방 시설	3,930	10,006	3,809	9,693	121	313	-	-	-	-
	학교	방음 시설	-	-	-	-	-	-	-	-	-	-
		냉방 시설	1	3,190	-	-	1	3,190	-	-	-	-
	공영방송 수신료	48,670	1,470	36,616	1,108	12,036	361	18	1	-	-	
	전기 요금 지원	학교	41	553	31	394	10	159	-	-	-	-
일반 주민		56,057	10,348	42,264	7,815	13,770	2,529	23	4	-	-	
주민지원 사업	소계	33	11,063	6	7,387	21	2,609	3	888	3	179	
	국비	-	8,160	-	5,540	-	1,875	-	616	-	129	
	구비	-	2,903	-	1,847	-	734	-	272	-	50	
합계		37,448백만원		27,067백만원		9,292백만원		910백만원		179백만원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인근지역 현황>

구 분	소음대책지역		소음대책인근지역
근 거	<p>공항소음방지법 제2조제2호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u>소음영향도(WECPNL,웨클) 75이상의 지역</u></p>		<p>공항소음방지법 제18조제2항 소음대책지역 밖의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소음영향도(WECPNL,웨클) 70이상 75미만의 지역</u></p>
해 당 지 역	<p>양천구(신월동 다수) 구로구(고척동 다수) 강서구(공항동, 화곡동 일부) ※ (면적) 13.1km², (가옥수) 45,715호</p>		<p>양천구(신정동 다수) 구로구(가리봉동, 개봉동 다수) 강서구(공항동, 화곡동 다수) 금천구(가산동, 독산동 일부) ※ (면적) 13.4km², (가옥수) 71,551호</p>
국 가 (공항사) 지원 사항	소 음 대 책 사 업	<p>법 제8조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손실보상 및 토지 등의 매수 등 ※ 국비 100% 지원</p>	<p>< 해당사항 없음 ></p>
	주 민 지 원 사 업	<p>법 제19조 -주민복지사업: 공동이용시설(도서관, 체육공원 등) 설치, 교육문화사업 등 -소득증대사업: 공동작업장 및 공동 영농시설의 설치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 국비 75%, 구비 25% 지원</p>	
서울시 지원 사항 (조례)	<p>○ 주민지원사업(조례 제4조) -공항소음 관련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제공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신고접수 및 처리 -공항소음 피해 예방 및 대처에 대한 홍보 등</p> <p>○ 주민지원센터 설치·운영(조례 제4,5조) -주민지원사업 위탁 관리</p>		<p>< 해당사항 없음 ></p>

2)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조,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제3조, 제4조제1항)

- 서울시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 방지법」”)과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공항소음 조례」”)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음대책 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현행 「공항소음 조례」는 소음대책지역관련 자료 수집과 정보 제공, 소음 피해 신고 접수 및 처리 등을 포함하는 주민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주민지원 사업을 위탁 관리하는 주민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명시하고 있음.

다만,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에 대해서는 조례 규정 없이 「공항소음방지법」 규정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따라서 「공항소음 조례」에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 및 이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인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공항소음에 대한 피해 보상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3)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직접 지원 근거 규정(안 제5조 및 제7조)

- 안 제5조와 제7조는 주민지원사업을 현행 민간위탁³⁾의 형태가 아닌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르면 공공서비스 공급을 위한 전체과정이나 서비스 공급의 핵심적인 부분을 민간이 수행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이 적정

3)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는 ‘민간위탁’을 각종 법령 및 조례·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시의회 동의 및 공개모집 등의 민간위탁 절차를 통한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현행 조례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4) 구청장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안 제6조제2항)

- 안 제6조제2항은 시장이 「공항소음방지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구청장에게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4)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함.

다만, 현행 주민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공항공사, 75%)을 지원받아 구청장(25%)이 시행하고 있는 바, 시가 구청장에게 별도의 재정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의 내용, 자치구의 재정사정, 지원대상의 성격, 예산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임.

<주민지원사업비 집행현황('18년 기준)>

자치구	사업비(백만원)		
	계	국비(공항공사)	구비
합계	11,063	8,160	2,903
양천구	7,387	5,540	1,847
구로구	2,609	1,875	734
강서구	888	616	272
금천구	179	129	50

4)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 특별시·광역시·도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수정안 요지

- 공향소음대책지역과 공향소음대책인근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은 시의회 동의 및 공개모집 등의 민간위탁절차를 통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므로 현행 조례를 유지하고 국고보조금(75%)을 지원받아 구청장(25%)이 시행하고 있으므로 별도 시 재정지원의 필요성은 없음.

8.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097
----------	------------

제안년월일 : 2019년 12월 17일

제안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1. 수정이유

- 공항소음대책지역과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은 시의회 동의 및 공개모집 등의 민간위탁절차를 통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므로 현행 조례를 유지하고 국고보조금(75%)을 지원받아 구청장(25%)이 시행하고 있으므로 별도 시 재정지원의 필요성은 없을 것임.

2. 주요 골자

- 주민지원사업의 형태를 현행 민간위탁으로 유지함(안 제5조, 제7조).
-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자치구에 시 재정지원은 불필요함(안 제7조제2항 삭제).

3. 참고사항: 생략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을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 내에 주민지원센터 및 분소를 설치·운영할”로 한다.

안 제5조 중 “위탁 및 지원할”을 “위탁할”로 한다.

안 제6조 중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안 제7조 중 “위탁 및 지원과”를 “위탁과”로 하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u>서울특별시</u> <u>공항소음대책지역</u> <u>주민지원에 관한 조례</u>	<u>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u> <u>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u> <u>조례</u>	<u>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u> <u>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u> <u>조례</u>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 ----- ----- ----- ----- ----- -----.</p>	<p>제1조(목적) (개정안과 같음)</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제2조(정의) ----- ----- -----.</p>	<p>제2조(정의) ----- ----- -----.</p>
<p>1. (생략)</p> <p>2. "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 -----.</p>	<p>1. (개정안과 같음)</p> <p>2. (개정안과 같음)</p>
<p><신 설></p>	<p>3. "소음대책 인근지역"이란 법 제18조제2항에 따</p>	<p>3. (개정안과 같음)</p>

3. "주민지원사업"이란 소음대책지역의 항공기 소음의 저감에 따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4조제1항 제1호부터 4호까지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4조(주민지원사업) ① 시장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생략)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을 말한다.

4. -----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

----- 제4호 -----
-----.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주민지원사업) ① -----
-----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

-----.

1. ~ 4.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

3. (개정안과 같음)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개정안과 같음)

제4조(주민지원사업) ① (개정안과 같음)

1. ~ 4. (개정안과 같음)

② -----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p>제5조(주민지원사업의 위탁)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관련 분야의 법인 또는 단체에 <u>위탁</u> 할 수 있다.</p>	<p><u>지역 주민지원센터</u>를 설치· <u>운영</u> 할 수 있다.</p> <p>제5조(주민지원사업의 위탁) ----- ----- <u>위탁</u> 및 지원할 -----.</p>	<p><u>인근지역</u> 내에 주민지원센터 및 <u>분소</u>를 설치·<u>운영</u>할 -----.</p> <p>제5조(주민지원사업의 위탁) ----- ----- <u>위탁</u>할 -----.</p>
<p>제6조(주민지원사업비 지원)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6조(주민지원사업비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 과 같음)</p> <p>② 시장은 법 제19조제1 <u>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u> <u>시행하는 자치구에 예산의</u> <u>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u> <u>를 지원할 수 있다.</u></p>	<p>제6조(주민지원사업비 지원) (현행과 같음)</p>
<p>제7조(준용규정) 주민지원 사업의 <u>위탁</u>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 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 무의 <u>민간위탁에 관한 조</u> <u>례</u>」에 따른다.</p>	<p>제7조(준용규정) ----- --- <u>위탁</u> 및 지원과 -----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 의 <u>민간위탁에 관한 조례</u>」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 금 관리 조례」 -----.</p>	<p>제7조(준용규정)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5조 제1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소음대책지역”을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으로, “4호”를 “제4호”로 한다.

3. “소음대책 인근지역”이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소음대책지역”을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음대책지역”을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을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 내에 주민지원센터 및 분소를 설치·운영할”로 한다.

제5조 중 “위탁 할”을 “위탁할”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3. "주민지원사업"이란 소음대책지역의 항공기 소음의 저감에 따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4조제1항제1호부터 4호까지의 사업을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 -----.</p> <p>제2조(정의) -----.</p> <p>1. (현행과 같음)</p> <p>2.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p> <p>3. "소음대책 인근지역"이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을 말한다.</p> <p>4. -----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 제4호-----.</p>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4조(주민지원사업) ① 시장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향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주민지원사업의 위탁)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관련 분야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주민지원사업) ① ----- 소음대책
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
-----.

1. ~ 4. (현행과 같음)

② -----
----- 소음
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 내에 주민
지원센터 및 분소를 설치·운영할 -----.

제5조(주민지원사업의 위탁) -----

위탁할 -----.